2021년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주요 개정사항

1. 복합식품(Composite Product)이란?

○ 동물 유래 가공식품(Processed Product of Animal Origin)과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형태의 식품

- 혼합된 식물성 재료가 최종 가공식품 제조에 필수적이거나 특별한 성질을 주지 않아야 함

동물 유래 가공식품(PPAO) :	육류, 동물부산물(뼈, 피, 내장, 지방 등), 수산물, 동물 유성분(Milk) 및 알류, 꿀 등을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

예 시	
(고추)참치통조림	수산 가공품
새우튀김	수산 가공품
어묵	수산 가공품
액젓	수산 가공품
굴소스	복합식품
시즈닝	동물성 재료와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경우 복합식품, 그렇지 않을 시 재료에 따라 육류 가공품, 수산 가공품 등으로 분류
후리카케(가루시즈닝)	복합식품
아이스크림	제조공정 중 열처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복합식품, 포함되는 경우 유제품
냉동 모짜렐라 치즈스틱	유제품
완조리 삼계탕	육류 가공품
냉동닭꼬치	육류 가공품
완조리 닭고기 함유 냉동만두	복합식품

▼▼▼

이번 변경규정은 EU로 수입되는 "복합식품"에 적용되는 규정임

※ 참고 : 유럽위원회 배포 복합식품 관련 가이드(2015) / Annex III 참조

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`21.02.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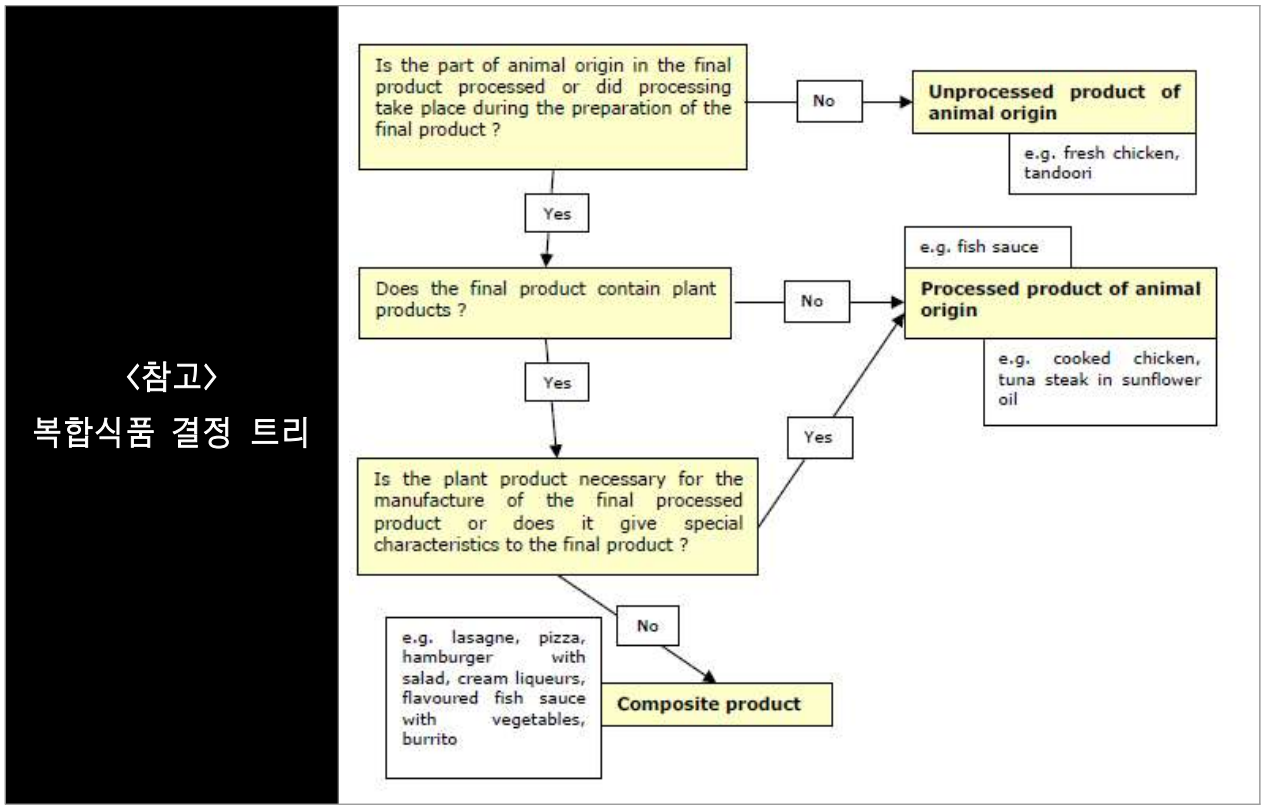

2. 주요 개정사항

○ 규정 적용기준

(기존) 함량 무관	함량 기준	
식육 함유 또는 유제품 함유 비 상온 보관 식품	식육과 비 상온 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 유래 제품 함량	
	50% 이상 함유	50% 미만 함유

▼▼▼

(변경) 위험도에 따라 "3개 카테고리"로 분류		
비 상온 보관	식육 함유 상온 보관	상온 보관 복합식품

○ 제출서류

공식 증명서 (Official Certificate)		사설 인증서 (Private Attestation)
비 상온 보관	식육 함유 상온보관	상온 보관 복합식품

※ 공식 증명서는 수출자(생산자), 사설 인증서는 수입자가 작성함

※ 공식 증명서의 경우 현재 식약처와 해수부에서 발행부처 관련 협의 중

3. 유의사항

○ 복합식품에 함유된 모든 동물 유래 가공식품(PPAO)은 반드시 EU 회원국 혹은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 작업장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함

- 해당 원료의 제품 내 함유량이 1% 미만의 경우에도 신규 규정 적용대상
- 이는 2006년부터 적용되어온 규정으로 이번 개정사항이 아님

○ 복합식품 생산 작업장은 EU 승인대상이 아니며, 각 국가 담당 관청의 관리 하에 등록된 업체면 EU로 수출 가능함

예시) 제조과정별	작업장의 EU 승인
액젓(수산 가공품)과	필요
채소 성분이 혼합된 시즈닝(복합식품)을	불필요
사용한 라면(복합식품)	불필요

○ 적용대상 HS코드 : 24개

1517, 1518, 1601 00, 1602, 1603 00, 1604, 1605, 1702, 1704, 1806, 1901, 1902, 1904, 1905, 2001, 2004, 2005, 2101, 2103, 2104, 2105 00, 2106, 2202, 2208

○ 아울러 EU Decision 2011/163에 해당 품목 수출이 가능토록 등재되어야 함

- 현재 한국은 수산물과 가금육(70℃ 이상 열처리)에 한해 잔류물질 프로그램 승인되어 해당 원료를 함유한 상온·비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수출가능
- 동물 유성분(Milk)와 알류(Eggs)의 경우 식약처에서 EU 대표부로 EU 회원국 또는 EU가 수입을 승인한 제3국 소재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유·알 가공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1/163에 등재 신청('21.2.1), 등재 이후 해당 원료를 함유한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한해 수출 가능(비 상온 보관식품은 수출 불가)
- 육류를 함유한 복합식품은 EU로 수출 불가

○ 모든 복합식품은 EU 통관 시 검역대상이나, EU 위원회에서 공표 예정인 <저위험식품 리스트>에 해당 시 해당 품목은 최종 도착국에서 검역

4. 적용시점

○ Regulation (EU) 2020/2235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 설정(Article 35)

- 4.21 이전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4.21 이후 EU에 도착하는 경우 기존의 위생증명서 지참, 10.20까지 EU 반입 허용될 수 있음
- 프랑스 Roissy 샤를드골 검역소 문의(2.17) 결과 4.21 이전 선적 분에 대해서는 신규 규정에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

5. 한국 소관부처

○ 복합식품(총괄) :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(043-719-2158)

○ 수산물 가공 작업장 등록관련 :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(044-200-5619)

<u>참고</u>

1) 유럽위원회 배포 복합식품 관련 가이드(2015) : 복합식품 예시(Annex 3)
https://data.consilium.europa.eu/doc/document/ST-7694-2015-INIT/en/pdf
2) EU Decision 2011/163
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CELEX%3A02011D0163-20210101
3) Regulation (EU) 2020/2235
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CELEX:32020R2235